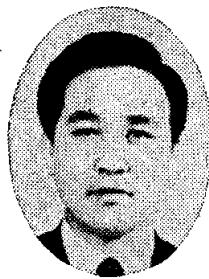


長期投資의 會計處理



李 正 浩
(서울大 經營大 副教授)

1. 長期投資에 관한一般的 考察

한企業이 다른會社의 社債(bonds)와 같은債務證券(debt securities)이나 株式과 같은持分證券(equity securities)을 購入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證券을 취득할 경우 經營者의 投資意思 또는 投資目的에 따라 이는 短期投資로 分類되든지 아니면 長期投資로 구분되어 貸借對照表에 기재한다.

證券에의 投資가 短期投資(short-term investment)로 취급되는 경우 이는 資產의 分類上 流動資產에 속하는 「有價證券」 또는 「市場性 있는 有價證券」(marketable securities)으로 表示하게 된다. 「有價證券」 또는 「市場性 있는 有價證券」으로 分類表示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短時日內에 現金으로 轉換시킨다고 하는 經營者的 意思(management intention)와 또 이와 같은意思가 場市을 通해서 販賣될 수 있는 市場性(marketability)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두가지의 條件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대해서 長期投資(long-term investment)로 分類表示되는 證券에의 投資는 資產의 分類上 固定資產에 속하는 「投資」의 취급대상이 된다. 물론 長期의인 證券投資라고 할 경우 크게는 債務證券과 持分證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나 이곳에서는 後者에 국한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한企業이 持分證券에 投資하는 目的, 바꾸어 말하면 다른企業의 普通株(common stock)나 優先株(preferred stock)를 취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例컨대 他企業을 統制하고 影響力を行使하기 위해서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新製品이나 새로이 開發한 用役을 販賣하여, 企業의 成長을 꾀하려는 意圖에서, 또는 새로운 市場을 개척하여 製品의 供給處를 찾기 위해서, 또는 그밖의 經濟的理由에서 投資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企業이 他會社의 株式을 취득할 경우, 去來는 株式을 취득하는 會社와 株式을 所有하고 있는 株主와의 사이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이 경우의 會計상의 문제는 株式을 취득하는 立場에서 주로 발생한다.

投資會社가 他企業의 株式을 취득할 경우에 그 會社의 優先株(preferred stock)나 普通株(common stock)의 一部 또는 全部을 취득하게 되는데 만일 株式을 취득하는目的이 他企業을 統制한다든가 또는 他企業에 影響力を 발휘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라 할 것 같으면 그것은 普通株式을 購入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意思決定에 參여할 수 있게 된다. 즉 普通株만이 投票權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議決權 있는 株式(voting capital stock)에의 長期投資를 할 경우 이에 대한 測定 및 報告와 관련된 判斷을 위해서 美國의 會計原則審議會(Accounting Principles Board, APB)는 그의 意見書 第18號(Opinion No. 18)에서 「重大한 影響」(significant influence) 및 「統制」(control)를 判斷基準으로 提示하고 있다. 意見書에 따르면 이들이 의미하는 바는 大略 다음과 같다.

(1) 重大한 影響(significant influence): 이것은 他會社의 議決權 있는 株式을 所有하고 있는

投資會社가 業務 및 財務政策에 重大한 程度 (important degree)로 影響을 미칠 수 있는 能力を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重要한 影響은 具體的으로 다음과 같은 要件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他會社 理社會의 メンバーシップ(membership)을 갖는다. ② 政策決定過程에 参여한다. ③ 兩會社間에 重要한 去來關係를 갖는다. ④ 經營者의 相互交流 ⑤ 技術上의 相互依存性. 이같은 요인으로도 명확한 判斷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他企業의 株式을 最少한 20% 이상 所有하고 또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 하면 中대한 影響

株式所有類型

1. 重大한 影響을 미칠 程度로 所有하고 있지도 않고 統制도 하지 못하는 경우 (20%以下의 株式所有)
2. 重大한 影響은 미칠 수 있으나 統制는 할 수 없을 程度로 所有하고 있는 경우 (20%以上~50%以下の 株式所有)
3. 統制可能할 정도로 所有하고 있는 경우 (50%以上の 株式所有)

위와 같은 기준을 따르게 될 경우에는 他會社의 議決權 있는 株式을 20%以下밖에 所有하고 있지 못하여 그 會社에 대하여 重大한 影響力を 행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統制力を發揮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原價法(cost method)에 따라 測定報告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他會社의 業務 및 財務政策에 重大한 影響력을 미칠 수 있으나 統制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때에는 持分法(equity method)에 따라 測定・報告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聯結報告書法(consolidated statement method)을 採擇하는 경우는 他會社의 株式을 50%以上 所有함으로서 意思決定(業務 및 財務政策上의)을 할 수 있는 때에 적용하는 方法이 될 것이다.

聯結報告書法의 경우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原價法과 持分法에 관해서 보기로 하자.

2. 原價法과 持分法

위의 表에서 보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原價法과 持分法은 他企業에 대한 株式의 所有가 統制(control)할 수 있을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採擇되는 方法이다. 그러니까 聯結財務諸表의 作成을 필요로 하지 않는 非聯結從屬會社

力を 行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統制(control) : 이것은 他會社의 議決權 있는 株式을 所有하고 있는 投資會社가 業務 및 財務政策을 決定할 수 있는 能力を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他企業의 議決權 있는 株式을 50% 以上 所有하게 되면 實質적으로 統制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은 他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 類型에 따라 投資에 따른 會計上의 測定 및 報告方法은 다음과 같이 다르게 된다.

測定 및 報告方法

- | | |
|---|---------------------------------------|
| 1. 重大한 影響을 미칠 程度로 所有하고 있지도 않고 統制도 하지 못하는 경우 (20%以下의 株式所有) | 原價法(cost method) |
| 2. 重大한 影響은 미칠 수 있으나 統制는 할 수 없을 程度로 所有하고 있는 경우 (20%以上~50%以下の 株式所有) | 持分法(equity method) |
| 3. 統制可能할 정도로 所有하고 있는 경우 (50%以上の 株式所有) | 聯結報告書法(consolidated statement method) |

(unconsolidated subsidiaries)와의 投資去來에 적용되는 方法이라 할 수 있다.

原價法과 持分法은 他會社의 一定株式을 取得한 뒤에 損益의 認識方法에 差異가 있다.

(1) 原價法(cost method) : 原價法은 한 會社가 다른 會社의 議決權 있는 株式을 취득하고서도 重大한 影響력을行使하지도 못하고 또 統制力を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 採擇되는 方法이다. 이 方法을 채택하게 되면 投資額은 原價로서 計定에 기입되며 取得 후의 投資額은 低價法에 따라 評價된다. 그리고 投資額은 貸借對照表 固定資產의 投資資產項目에 分類表示된다. 그리고 他會社(investee)로부터 配當金을 支給받게 되었을 때 投資會社에서는 投資收益(revenue from investment) 計定의 貸邊에 記入한다. 이와 같이 볼 때 이는 有價證券을 賣買할 경우의 記帳處理方法과 다른 것이 없다.

1975年 12月에 發表된 財務會計基準審議會(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FASB)의 報告書(statement) 第12號 “市場性있는 有價證券의 會計” (Accounting for Certain Marketable Securities)에서는 原價法下에서의 長期持分投資는 取得後에 低價로 評價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따라서 會計期末에 가서는 모든 原價로 記入된

長期投資는 總原價와 더불어 時價로도 評價하여 計上되어야 한다. 만일 總時價額이 總原價보다 낮은 경우는 그 差額을 借邊計定科目으로는 “長期投資未實現損失”(unrealized loss on long-term investment), 그리고 貸邊計定科目으로는 “長期投資控除充當金”(allowance to reduce long-term investments to market)을 설정하여 처리한다. 이에 後者는 所有者持分에 대한 相殺計定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뒤에 時價가 上昇하면 取得原價를 超過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投資額을 增額시킨다. 후일에 販賣가 이루어지면 處分價格과 取得原價와의 差額을 實現利得 또는 損失(realized gain or loss)로서 報告된다.

[例 题]

19×1年 2月 1日 : ABC會社는 다음과 같이 長期投資하다.

Backer會社의 普通株(額面 ₩1,000) 1,000株를 株當 ₩1,200에 取得하다. (이는 發行株의 10%에 該當함)

Cox會社의 優先株(額面 ₩2,000) 500株를 株當 ₩4,000에 取得하다. (이는 發行株의 1%에 該當함)

Dr. 長期投資 3,200,000

Cr. 現金 3,200,000

19×1年 3月 31日 : 長期投資에 대한 配當金을 다음과 같이 받다.

Backer會社의 普通株에 대해서는 1株當 ₩100

Cox會社의 優先株에 대해서는 額面價額의 5%

株式數	時價(19×2年 12月 31日)	取得原價	時價(19×2年 12月 31日)
Backer會社普通株.....	1,000	₩1,100	₩1,200,000
Cox會社優先株	200	₩4,300	800,000
		₩2,000,000	1,960,000

(₩2,000,000 - ₩1,960,000) = ₩40,000 充當金計定으로 처리하여야 할 部分. 따라서 充當金計定의 控除部分은 ₩100,000 - ₩40,000 = ₩60,000이다.

위와 같은 去來가 損益計算書와 貸借對照表에는 다음과 같이 表示된다.

<損益計算書>	19×1年	19×2年
投資收益.....	150,000	110,000
投資處分利益.....		30,000

<貸借對照表>	19×1年	19×2年
---------	-------	-------

Dr. 現金 150,000

Dr. 投資收益 150,000

19×1年 12月 31日 : 年末의 長期投資를 時價로 評價한 결과 다음과 같다.

Backer會社의 普通株 株當 ₩1,300

Cox會社의 優先株 株當 ₩3,600

Dr. 長期投資未實現損失 100,000

Cr. 長期投資控除充當金 100,000

19×2年 6月 15日 : Cox會社의 優先株 300株를 株當 ₩4,100에 處分하다.

Dr. 現金 1,230,000

Cr. 長期投資 1,200,000

投資處分利益 30,000

19×2年 9月 30日 : 다음과 같이 配當金을 支給받다.

Backer會社의 普通株 1株當 ₩90

Cox會社의 優先株 額面價額의 5%

Dr. 現金 110,000

Cr. 投資收益 110,000

Backer會社普通株 1,000株 × ₩90 = ₩90,000

Cox會社 優先株 200株 × ₩2,000 × 5% = ₩20,000
₩110,000

19×2年 12月 31日 : 年末에 長期投資를 時價로 評價한 결과 다음과 같다.

Backer會社의 普通株 株當 ₩1,100

Cox會社의 優先株 株當 ₩4,300

Dr. 長期投資控除充當金 60,000

Cr. 長期投資未實現損失 60,000

投資資產 :

持分證... 3,200,000 2,000,000
券投資

長期投資控除充當金 100,000 3,100,000 40,000 1,960,000

株主持分 :

長期投資未實現損失 (100,000) (40,000)

以上에서 보여준 分介는 取得時에 原價主義에 따라 처리하고 그 뒤로부터는 低價主義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의例가 된다. 投資額은 低價로서 항상 移越되게 되며 投資收益은 配當이 確定된 때에 한해서 認識한다.

여하튼 위에서 든例는 Backer會社에 대해서나 또는 Cox會社에 대해서나 株式을 所有하고 있다는 事實이 아무런 影響力 및 統制力を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채택하는 會計方法과 報告의 問題에 관해서 例示한 것이다.

(2) 持分法(equity method) : 어느 한 企業이 다른 企業의 議決權 있는株式을 最少限 20% 이상 50%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會社에 대해서 重大한 影響力を行使할 수 있다는前提를 갖고 있다는 점은 앞에서 言及한 바 있다. 이 경우에는 이를 測定·報告하는데 持分法을 적용한다. 그런데 이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會社에 대해서 重大한 影響力を 행사할 수는 있으되 財務政策과 그밖의 配當政策을 포함한 業務政策을 統制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본다.

다른 會社의 配當政策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他企業의 純利益은 投資企業의 意思에 따라 配當金을 受取할 수 있다. 持分法下에서 配當을 操作함으로서 나타나는 利益操作의 可能性을 배제하기 위해서 投資會社는 被投資會社가 配當하는 配當金을 수취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被投資會社의 純利益 또는 純損失의 一定比率을 매년 認識하게 된다. 認識時點에서 비록 現金은 受取하지 않더라도 借邊의 投資計定은 增加시키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持分法을 取扱할 경우에는 다른 企業에 대한 投資企業의 利益 또는 일정비율을 投資企業의 投資計定(investment account)과 投資收益計定(investment revenue account) 또는 投資損失計定(investment loss account)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配當金을 支給받으면 現金計定借邊과 投取한 配資計定貸邊에 각각 기입하게 된다. 이와 같이 受當金은 投資計定殘額을 減少시키게 되는 것으로 처리한다. 왜냐하면 配當收益은 被投資會社에서 利益을 내었을 때 이미 投資收益計定에 上되어 있기 때문에 配當金을 받았을 때 다시 記載하게 되면 二重記錄되기 때문이다.

持分法에 관한 다음의 例問을 통해서 測定 및 報告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例 題]

Crown會社(投資會社)는 19×1年 1月 15일에 Davis會社(被投資會社)의 普通株 3,000株를 株當 ₩1,200에 買入하였다. 取得當時의 Davis會社는 10,000株의 普通株(額面價額 ₩1,000)를 發行한 바 있다. Crown會社에서 他會社의 議決權 있는株式 30%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持分法을 적용하여야 한다. 取得時に Crown會社는 原價로 다음과 같이 記入한다. (이 例는 帳簿價格으로 購入한 경우를 예로 들은 것이나 이를 時價로 評價하여 記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資產을 評價增 또는 評價減시킨다든가 또는 營業權을 認識하는 등의複雜한 問題가 발생한다)

19×1年 1月 15日 :

Dr. 普通株投資.....	3,600,000
Cr. 當座預金.....	3,600,000

Davis會社의 普通株 3,000株(30%)를 株當 ₩1,200에 取得하다.

取得이후의 被投資會社는 投資會社에 대해서 純利益(또는 純損失)과 投資收益에 대한 分配率을 報告하게 된다.

例로서 1971年末에 Davis會社는 ₩50,000의 純利益을 報告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投資會社인 Crown會社는 投資比率에 따라 利益을 認識하다.

19×1年 12月 31日 :

Dr. 普通株投資.....	150,000
Cr. 投資收益.....	150,000

19×1年 Davis會社의 報告利益 ₩500,000중 30%를 記入한다.

그리고 被投資會社로부터 配當金을 受取하게 되면 投資計定을 減額시키는 分介를 하게 된다.

例로서 Davis會社에서 19×1年末에 ₩100,000의 現金을 配當金으로 支給하고 Crown會社는 이 중 30%인 ₩30,000을 受取하였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分介한다.

19×1年 12月 31日 :

Dr. 現金.....	30,000
Cr. 普通株投資.....	30,000

Davis會社에서 配當金을 現金으로 受取함.

위에서 설명한 것은 要約해 말하면 持分法下

에서 投資計定은 처음에는 原價로 출발하여 被投資會社의 利益의 增減에 比例하여 增減하며 損失이 發生함에 따라 減少한다. 그리고 被投

資會社의 配當金支給과 동시에 그에 해당하는 만큼 投資計定은 감소한다. Crown會社의 帳簿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普通株投資-Davis會社

×1/1/15 3,000株取得	3,600,000	×1/12/31 Davis會社로부터 配當金受取	30,000
×1/12/31 1971 Davis會社 純利益의 30%	150,000		
投 資		收 益	
		×1/12/31 Davis會社로부터의 收益	

Crown會社의 19×1年末 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에는 다음과 같이 表示된다.

Crown會社 貸借對照表
19×1年 12月 31日

投資資產：

普通株投資 持分法에 의한(原價)
₩3,600,000) 時價₩3,690,000 3,720,000

* 時價 ₩3,690,000은 所有株式數에 貸借對照表日의 實際時價를 곱하여 求한 값이다.

Crown會社 損益計算書
自19×1年 1月 1日 至19×1年 12月 31日

投資收益..... 150,000

위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株式에 投資한 경우 原價法에 의하여 測定·報告하는 경우와 持分法에 의한 경우는 그 意味·內容을 달리 하기 때문에 財務諸表의 分析者 및 利用者들의 判斷을 誤導하지 않기 위해서, 採擇한 方法을 明示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原價法에 의하든 持分法에 의하든 株式의 取得原價, 時價投資의 移越價額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方法으로 公示하여야 한다.